

Tax News Flash

- Transfer Pricing & Customs

March 23, 2026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 이전가격

호주: 공개 국가별(CbC) 보고서 제출 지침 및 추가 안내사항 발표

호주 국세청(ATO)은 공개 국가별(CbC)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출 지침을 확정하고, 추가 안내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침은 공개 CbC 보고 의무가 있는 모회사가 2024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보고 기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발표된 것입니다.

1. 주요 안내사항

ATO는 "보고 대상 정보를 선정할 때에는 『글로벌 보고 이니셔티브(GRI) 207: 조세 2019 보고 기준』에 따르고, 해당 기간의 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된 연결재무제표와 일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ATO는 "공개 CbC 보고와 일반 CbC 보고는 서로 다른 요건을 가진 별개의 제도이며, 납세자 및 일부 공개 CbC 보고 대상자들은 두 보고서를 모두 작성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발표로 납세자는 보고서 작성 시 GRI 기준과 연결재무제표 간 일치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또한 공개 CbC 보고와 일반 CbC 보고를 모두 작성해야 할

수 있으므로 기업 내부의 조세 및 회계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지침은 다국적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 조세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벨기에: 글로벌 최저한세를 위한 환율 적용 방식 안내

벨기에 세무 당국은 다국적 기업 및 대규모 국내 계열사의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한 '2025/C/68 통지'의 부록으로 '2026/C/41 통지'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국은 글로벌 최저한세를 위한 환율 적용 방법에 대한 안내를 제공했습니다.

1. 주요 안내사항

이 지침은 2025년 5월에 발표된 OECD 통합 해설서를 기반으로 하며, 연결재무제표 및 추가 세액(top-up tax)이 특정 통화로 계산될 때 해당 금액을 유로로 환산하는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OECD 규정과 비교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벨기에의 경우 표시 통화(presentation currency) 기준 추가세액은 회계연도말의 유럽중앙은행(ECB) 기준 환율을 사용해 환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시사점

이번 지침으로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계산 시 환율 적용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고, 연결재무제표와 추가세액 계산 간 불일치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계연도말의 ECB 기준 환율을 사용해야 하므로, 내부 회계 및 세무 시스템에서 환율 데이터 관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2021 두 35643, 2026.02.12.

제목: 외국투자자가 감면대상인 증자 투자와 무관한 기존 투자로 취득한 지분에서 생기는 배당금이 감면 대상인지 등이 문제된 사건 [국승]

1)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인 원고가 증자 후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신규 증자분뿐만 아니라 기존 주식 보유분까지 포함해 법인세 감면을 적용하여 세금을 신고하였음
- 이에 과세당국은 신규 증자 비율만큼만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약 968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함

2) 법원판단

- 법원은 조세 감면 혜택은 실질적으로 기여한 신규 투자(증자 주식)에만 한정되어야 하며, 이미 감면 기간이 끝난 기존 주식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전체 배당금 중 증자 주식 비율만큼만 세금을 감면한 세무서의 계산 방식이 적법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여 약 968억 원의 추징을 확정하였음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제12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4(증자의 조세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 경우에 그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세감면신청에 대해서는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03 관세

한국 기업의 IEEPA 기반 관세 환급 기회와 실행 전략

들어가며

2025년 美 행정부가 발동한 IEEPA(국제경제긴급권한법,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기반 관세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2026년 2월 20일, 美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의 위헌·위법함을 판결한 이후, 美 관세청은 국제무역법원의 명령에 따라 既납부된 IEEPA 관세를 수입자에게 환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인 CAPE(Customs Automated Processing of Entries)를 단계적으로 구축 중입니다. 환급 규모와 실현 가능성은 결국 기업이 얼마나 선제적으로 데이터를 정비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주요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기업이 즉시 점검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합니다.

1. IEEPA 관세 환급 가능성 평가

IEEPA 관세 환급의 출발점은 정확한 대상 식별과 환급 가능 금액 산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은 ACE 수입 데이터 및 내부 ERP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우선, IEEPA 관세가 적용된 엔트리를 식별하기 위해 IEEPA 대상 HTS Chapter 99 코드 기준으로 납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후 각 엔트리의 통관 상태(예: Liquidated, Unliquidated, Suspended, Under Review 등)를 기준으로 환급 先처리 가능성(=우선순위)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P의 무역프로그램 국장이 국제무역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검토 중인 엔트리 등은 후순위 환급 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엔트리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Suspended Entry
- Extended Entry
- Under Review Entry
- AD/CVD 미청산 엔트리
- 보세창고 출고 및 Drawback 관련 엔트리

이는 기업에 두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해당 엔트리는 환급 처리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계적으로 현금 유입 시점(Cash-in timing)을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환급 신청을 전략적으로 분리하여 일반 엔트리와 후순위 엔트리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환급신청 과정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FTA 원산지 검토를 통한 환급규모 최대화

2025년 한·미 무역협정에 따라 한국산 물품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세율 구조에서, MFN 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는 한, FTA C/O(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15%의 세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많은 국내 기업들이 ①FTA C/O 발급을 실제로 중단했거나, ②FTA C/O를 발급하였지만, 미국 통관단계에서 미제출·FTA 특혜표기를 하지 않았을 수 있고, ③금번 환급규모 평가 과정에서 FTA C/O 소급발급 실익을 사후에 식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5년 한미무역협상에 따른 한국 상호관세율: 다음 중 높은 세율 (Max A or B)

A: [한미 FTA 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B: [15%]

금번 관세환급 대상은 IEEPA 기반 관세입니다. FTA C/O를 지속적으로 발급해온 국내기업이라면 환급대상 관세율을 15%로 인정받아야 할 것이며, FTA C/O를 중단했던 기업으로서 소급발효의 실익이 존재하는 기업들은 금번 환급신청 단계에서 MFN 환급까지 포함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CAPE 제출용 CSV 환급 파일 준비 및 검증

CAPE 시스템은 CSV(comma-separated values) 기반으로 환급 신청 데이터를 접수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파일 포맷 변경이 아니라, 기업의 데이터 관리 역량이 환급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CBP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 기반의 CSV 파일링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①사전 데이터 정합성 검증, ②필수 필드 관리, ③시나리오별 파일 구성은 환급 지연 및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시나리오 1: 선순위 엔트리와 후순위 엔트리를 분리하여 단계별 파일링
- 시나리오 2: 미청산 엔트리(PSC)와 청산 엔트리(Protest)를 구분하여 제출
- 시나리오 3: 기업별 특수 상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시나리오 구성 등

4. 환급 신청 및 CBP 정보요청 대응

환급 신청 전/후로 CBP는 CBP Form 28(정보요청)을 통해 개별 수입물품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확인 절차가 아니라, 환급액 축소/지연을 위한 검증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Form 28 대응이 지연되거나 불충분할 경우, 해당 엔트리는 "Under Review 등"의 통관 보류의 상태로 전환되어 환급 우선순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CBP의 주요 검증 포인트는 다음과 같으므로 국내 기업들은 환급 신청 전/후로 CBP의 정보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항목	검증 목적
거래 관계	특수관계 여부 및 Arm's Length 검증
과세가격	누락 비용 여부 확인
계약 문서	거래 실재성 검증
제품 설명	HS Code 적정성 검토
원가 구조	232 조 등 추가 관세 검증

5. 환급금 수취 및 이자 검증

환급금은 ACH 계좌를 통해 지급되며, 기업은 반드시 IEEPA 관세와 환급이자 금액을 비교 검증해야 합니다. 환급 금액과 이자 간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하며, 과다 환급 시에는 오히려 기업들에게 초과환급분에 대한 이자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 계산은 납부일부터 Liquidation 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자율은 Internal Revenue Service가 분기별로 공시하는 기준을 따릅니다.

마치며

IEEPA 관세 환급은 엔트리 식별, 데이터 검증과 제출, CBP 대응이 결합된 다단계 업무로, 각 단계의 오류나 지연이 환급금액 및 환급시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대규모 환급액이 연계된 해외 관세 이슈를 처리할 때에는 현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확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KPMG 는 미국 현지 Customs Broker 라이선스를 보유한 미국 KPMG 와 함께 IEEPA 관세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Key Contacts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이영호 상무

T. 02-2112-6763



황수주 상무

T. 02-2112-6782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김민철 상무(관세)

T. 02-2112-6677

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